

치료보호법안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	비 고
<p>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p> <p>⑩국가인권위원회법중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정치료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3.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치료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p>	<p>⑦국가인권위원회법중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보호치료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⑧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3.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치료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p>	

치료보호법안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	비 고
<p>⑫범죄피해구조법중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해자인 수형자의 작업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p> <p>⑬부패방지법중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치료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p> <p>⑭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⑨부패방지법중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치료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u></p> <p>⑩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u></p>	

치료보호법안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	비 고
<p>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치료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p>	<p>②<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보호치료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u></p>	

치료보호법안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	비 고
<p>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p> <p>⑮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치료보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치료보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u>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u></p> <p>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u></p> <p><u>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치료,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u></p> <p><u>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u></p> <p><u>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보호치료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u></p>	<p>비 고</p> <p>■ 범죄경력자료에는 과거 보호감호, 치료감호 자료도 모두 포함되어야 함</p>

치료보호법안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	비 고
<p>⑩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중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p>	<p><u>필요한 경우</u></p>	<p>■ 삭제</p> <p>○ 보호감호 대상 범죄를 저지른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므로 사회보호법폐지법안 부칙에 규정함이 상당</p>

치료보호법안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	비 고
<p>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p>	<p>⑫행형법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보호치료시설을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p>	<p>■ 추가</p>

6/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06.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9. 15

최용규 의원

나. 회부일자 : 2004. 9. 16

다. 상정 · 의결일자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4. 12. 14) 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5. 4. 22) 심사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5. 6. 15.) 심사

제5차 위원회(2005. 6. 22) 공청회 실시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5. 6. 28.) 심사, 의결(수정)

제7차 위원회(2005. 6. 29) 소위원장 심사보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용규의원)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험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중 두)

가.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에 관한 개요

사회보호법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안처분을 도입하게 된 근거법률로서 1980년 12월 18일, 당시 입법기관을 대신하고 있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에서 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음.)¹⁾

보안처분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임.

형벌이 행위책임에 의존하는 것에 비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책임과 관계 없이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에 의존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라는 세 종류의 보안처분을 규율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감호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보안처분임.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1) 1989년에 대폭 개정되어 필요적 감호규정을 삭제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법정요건으로 추가함.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근로를 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호'라는 보안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판결주문에는 감호기간의 선고가 없는 부정기적인 성격을 가지나 7년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없고(제7조제3항), 사회보호위원회가 보호감호의 집행개시 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보호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벌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여(제23조제1항),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분하고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이원주의(二元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음.

(2)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보안처분으로서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치료감호 기간을 형기로 대체하고 치료적 조치 등을 행한다는 점에서 보호감호와 달리 사회보호의 보안적 측면과 피치료감호자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치료감호기간은 절대적 부정기로 규정하여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가종료 결정을 받을 때(제9조제2항)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제2항), 집행개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친족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여(제23조제2항) 형벌은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대체주의(代替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와 가종료·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외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서 재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감호의 집행면제,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거나 감호시설에의 재수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있게 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됨(제10조).

나. 보호감호제도의 실제 운영현황

이 법안은 사회보호법중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보호감호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음.

(1) 보호감호시설 및 처우기준

우리나라는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피보호감호자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송 제1보호감호소, 제2보호감호소²⁾를 두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정공무원이 보호감호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³⁾

피보호감호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을 모델로 하여 제정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규칙' 및 행형관계법령에 의하여 분류·수용되고, 5등급으로 구분된 감호행장 등급⁴⁾에 따라 접견, 서신, 급여 등의 처우를 받고 있음.

(2) 보호감호 수용인원 변화

- 2) 제1보호감호소는 신입피보호감호자와 감호행장등급이 낮은 자(다, 라, 마급), 제2보호감호소는 감호행장등급이 높은 자(가, 나급)와 여자·소년감호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감호수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제1보호감호소는 교도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함.
- 3) 형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청송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하고 보호감호소로 이송됨.
- 4)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규칙은 피보호감호자의 적정한 수용, 처우 및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행장등급을 5등급(가, 나, 다, 라, 마 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처우하고 있음.

보호감호 수용인원은 1일 평균 4,500명 내지 4,600명⁵⁾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9년 사회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필요적 감호제도’가 폐지되고 ‘재범의 위험성’을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수용인원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음.

1992년 이후 2002년까지 감호청구사건이 연평균 4.2%씩 감소하고 2002년은 전년 대비 24.3%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범죄인원이 연평균 4.3%씩 증가한 현상과 대비된다고 하겠음.⁶⁾

특히, 2003년 후반 보호감호제도의 존폐문제가 논의되면서 법무부는 가출소를 확대하고 강력범 위주로 보호감호제도를 운영하기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2003. 12. 31. 기준으로 898명, 2004. 10. 31. 기준으로 206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임.⁷⁾

현재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의 본범 죄명은 강도죄가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에 절도죄의 비율이 가장 높고 폭력범이나 사기죄의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

5)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4.

6) 「법무연감」 법무부, 2004

7) 사회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04년도 10월 말까지 보호감호를 출소한 인원은 14,250여명에 이르고 있음.

면 보호감호가 강력범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피보호감호자 수용현황

(2004. 10. 31. 기준)

계	청송1	청송2	진주	소록도	치료감호소
206	140	63	.	.	3

※치료가 필요한 피보호감호자는 진주·소록도·치료감호소에 일시 위탁하고 있음.

피보호감호자의 죄명별 수용현황

(2004. 10. 15. 기준)

계	절도	강도	폭력	강간	사기
214	36	111	38	29	2
(100%)	(17%)	(52%)	(17%)	(12%)	(1%)

(3) 보호감호의 가출소자의 재범율

2003년 후반기에 가출소를 확대한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자 현황을 살펴 보면, 재범율이 33.7%⁸⁾에 이르고 있음.

8) 일반 형사범의 재범율 25%

일반 형사사범(25%)보다 높은 비율로 재범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가출소자 재범현황 ('03. 7.~'04. 9.)

(단위: 명, %.)

가출소 인원	재범 인원		
	계	구속	불구속
1,901	640	500	140
(100)	(33.7)	(26.3)	(7.4)

※'81~'01 가출소 후 2년 이내 평균 재범율은 33.3%

재범자 죄명별 현황

(2004. 10. 15. 기준)

(단위: 명, %)

계	강력사범					비강력범		
	강도	강도살인	성폭력	폭력행위	폭행치사	절도	사기	기타
640	45	1	19	88	1	364	44	78
(100)	(17)	(0.2)	(3.0)	(13.7)	(0.2)	(56.9)	(6.9)	(12.1)

※재범자 640명중 강력사범은 24.1%, 비강력사범은 75.9%

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의견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의 정당성 결여

사회보호법은 제5공화국 최초헌법(1980. 10. 27.공포)의 부칙 제6조제2항9)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음.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¹⁰⁾에 의하여 조직되어 운영되었고, 동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사회보호법의 제정절차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 제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는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한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함.

9) 第6條 ①國家保衛立法會議는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存續하며,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國會의 權限을 代行한다.

②國家保衛立法會議는 各界의 代表者로 構成하되, 그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③國家保衛立法會議가 制定한 法律과 이에 따라 行하여진 裁判 및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이유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④國家保衛立法會議는 政治風上의 刷新과 道義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日以前의 政治的 또는 社會的 腐敗나 混亂에 현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政治活動을 規制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있다

10) 1980. 10. 28. 공포·시행됨.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980. 10. 27. 공포된 구헌법 부칙 제6조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동조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87. 10. 29. 개정된 현행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위헌적인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수는 없다고 보았음(1996. 11. 28. 95헌바20).

(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헌법 제13조제1항후단에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음.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와 형벌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즉, 형벌과 보안처분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사회보호법 제1조와 행형법 제1조의 목적내용이 비슷하고,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집행에 있어서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피보호감호자는 수형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감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에 불과하다고 함.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¹¹⁾을 하면서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헌법 제13조제1항후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3) 과잉처벌금지원칙의 위반

11) 1996. 11. 28. 95헌바20, 2001. 3. 21. 99헌바7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원리 중 과잉 금지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정도 등에 비례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임.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형법의 누범가중은 행위책임, 상습범의 가중처벌은 생활영위책임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모두 형사정책적인 개별예방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히 상습범 처벌은 보호감호와 같은 보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습범과 누범의 이중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현행 형벌체계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형사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즉, 현행 형법 및 형사특별법이 이미 보안형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으므로 보호감호라는 추가적 형사제재장치를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임.

참고적으로, 독일의 경우 보안감호제를 두고 있으나 상습범가중처벌규정과 누범가중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상습범에 대한 예방구금을 폐지하고 자유형가중으로 대체한 예가 있음.

(4)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집행개시 후 1년간의 수용성적을 바탕으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고, 실무상 판단자의 직관적인 사후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즉,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기준을 전제로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그 남용이나 자의적 운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호감호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은 처음부터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것임.

(5)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의 본래 입법취지는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로부터 추방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를 교육·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것에 있으나, 실제 운영은 교도소와 다름없다고 주장함.

청송 제1·2 보호감호소는 시설면에서 교도소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정시설의 경비등급 중 최고 경비등급에 해당하는 초중구급시설이며, 지리적으로도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서 가족과 친지와의 접촉, 통근 작업 등이 어려운 상태이고, 교육과정도 수형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의욕 고취나 사회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보호감호제도 운영은 본래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함.

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입법논의

사회보호법 자체가 지난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함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논의가 대두되었음.

(1) 폐지론(대체입법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제정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상황에서 보호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부분은 폐지하되, 나머지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부분은 다른 대체입법을 통하여 존속시키자는 입장임.

최용규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 한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임.

(2) 개선론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강력범을 중심으로 재사회화 기능을 강조하여 운용하자는 입장임.¹²⁾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해악성보다는 실무관행이나 운용방식의 전근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

즉,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안처분은 범죄행위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의하여 과해지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나 직업적인 누범·상습범이 격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형벌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제도의 존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함.

12)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가 범죄에 대한 위하효과 및 사회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보호감호제도의 존치필요성을 주장함. 한편,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더라도 법원의 온정적인 양형판 아래에서는 상습범·누범가중 규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마. 제시의견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규율하여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보안처분은 본질, 목적 및 기능면에서 형벌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치료감호제도는 사회보호적 기능과 치료를 통한 피치료감호자의 재사회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반면, 보호감호제도는 수형생활의 연장선으로서 사회방위기능에 치중하여 운용됨으로써 제도의 본래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같은 대인적·자유박탈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즉, 보호감호가 사회보호의 목적을 위하여 피보호감호자를 사회와 단절되어 수용하여야 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치료감호와 같이 치료목적 달성이라는 결과물을 제시한다거나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도 있음.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하더라도, 기존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강력범을 위주로 감호시설을 도시근린지역으로 옮기어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만으로는 기존의 잘못을 답습할 염려가 크다고 보며, 사회보호 및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내처우 내지 중간처우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임.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보호감호처분이나 보호관찰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동시에 집행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9월 말 기준으로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196명 이외에도 형과 병과되어 청송교도소에 수형중인 400여명이 보호감호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 중에 있는 자' 이외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¹³⁾

나아가 형과 병과하여 보호감호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보호감호 선고가 형기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일시에 보호감호집행을 면제하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감호자 및 그 예정자를 일시에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13) 형벌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1조제3항에서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강력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형강화 법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5. 수정안의 요지

법안에는 이미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방위 및 판결의 집행력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미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함.

한편, 관련 기준의 완화 등 보호감호 집행의 탄력성을 통하여 가출소 및 집행면제를 확대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을 채택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의 결 (수정)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06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사회보호법」에 따라 이미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회방위 및 판결의 집행력 확보 등을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편,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과규정을 보완함.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부칙에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보호치료법」에 따른 보호치료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제3조(재판계속 중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이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계속 중에 「사회보호법」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제2조(피보호감호처분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거나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중 그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다.	제2조(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보호치료법」에 따른 보호치료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판계속 중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	제4조(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 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保護監護所·拘置所 및 矯導所”를 “구치소 및 교도소”로 한다.

④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료보호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⑤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⑥방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
나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집
행중에 있는 자

⑦보안관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징역·금고·구류·노역
장유치 또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중”을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
치중”으로 한다.

⑧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
감호, 보호관찰”을 “치료보호, 선고유예,
보호관찰”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중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를 “치료보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
무”로 한다.

⑨출입국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중 “교도
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
소·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으
로,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
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를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석방된 때, 치료보호처분을 받고 퇴
원한 때”로 각각 한다.

⑩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①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를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②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중 “(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를 “(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치료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이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계속 중에 「사회보호법」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보호치료법」에 따른 보호치료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제3조(재판계속 중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이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계속 중에 「사회보호법」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6월 임시국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에 대한
법률가, 의료인, 관련단체 의견서

2005년 6월 21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목 차

1. 6월 임시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1p
2.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의 보안대책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 법학자]	3p
3.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염형국 변호사]	8p
4.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독일의 사례 [이건호 법학자]	13p
5. 기존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점 [조성남 정신과전문의]	16p
6.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17p
7.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1p
8. 사회보호법 폐지와 올바른 치료보호법 제정을 위한 각계 선언 - 법률가 선언 - 의료인 선언 - 장애인단체 선언 - 인권단체 선언	23p

6월 임시국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

사회보호법은 지난 20여년간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입니다. 사회방위와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명분아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법에서 정한 형벌을 마친 이들을 다시 가두어 두는 비상식적인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회보호법은 정상적인 입법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80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제정 이후 이중처벌의 논란,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고, 오히려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피보호감호자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청송보호감호소는 이 시대 마지막 인권의 사각지대로 고발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년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눈물겨운 호소에 그제서야 세상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정행정 최초로 피보호감호자 600여명의 헌법소원을 이끌어 내었고, 급기야 2004년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법무부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의 가출소는 대폭 확대되었고,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늘어 갔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때는 무려 3명의 국회의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입법발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16대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보수 의원들의 반발로 자동폐기 되었던 사회호법 폐지안은 17대 국회에 초반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최용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전제로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각각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이 법의 폐지를 앞에 두고, 기쁨보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법무부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들과 감호가 병과된 채